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이익분배조항변경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이익분배 관련 내용 변경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

제 34 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채투자)	자구수정	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. ② 생략	① 수익자는 <u>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</u>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② 현행과 같음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	--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이익분배조항변경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이익분배 관련 내용 변경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零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	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

제 34 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채투자)	자구수정	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. ② 생략	① 수익자는 <u>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</u> <u>한</u>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 ② 현행과 같음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	---